

# 1. 土地超過利得稅法施行令中改正令

大統領令 第13,871號 1993. 3. 30
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된 율에 그 율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한다.

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199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에 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토지초과이득세는 유희토지의 지가상승이익에서 정상지가상승을 상당액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, 정과세시에 적용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건설부장관이 공표한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금융기관의 정기에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과세여건을 참작하여 그 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최근 지가가 안정추세에 있으며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정과세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3년간 전국평균지가상승율에 그 율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